

Adam Smith의 조세원칙에 관한 재음미

지 광 식 *

目 次	
I. 서 論	IV. 편의성의 원칙
II. 공평성의 원칙	V. 최소성의 원칙
III. 확실성의 원칙	VI. 결 論

I. 서 論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가 남긴 재정학상 위대한 공적의 하나는 조세에 관한 연구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경제행위와 나아가 국민경제활동을 보호한다는 명제에 뿌리박고 있음이 틀림없다. 스미스 자신이 『국부론』¹⁾(1776)에서 토마스 먼(Thomsa Mun)의 조세의 일반원칙의 6조²⁾를 인용하고 있다.

스미스의 조세에 관한 원칙이 이론적으로나 실제상의 문제로서나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그의 정치경제학의 범위에서 구축되었으며 재정활동에 있어서도 그 범주를 결코 이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재정론이 이 정치경제학의 체계속에서 논해지는 조세도 이 범주의 문제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된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생산의 증대는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며 역사적으로 화폐경제의 발전에 수반하여 국가수입의 조달을 정부재산수입의 쇠퇴에 따라 특별공납과 조세에서 구하는 소위 조세국가를 주창하였다.

*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상경학부 강사, 경제학박사

1) A. Smith, *An Inquiry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ed. Edwin Camman, 6th ed, London, 1950.

2) *Ibid.* p.327

그의 조세개념은 본질적으로 비생산적 소비로서의 규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조세와 경제이론과의 관계에서 이해된다.

스미스는 조세의 근거로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개인의 재산이나 생명의 보호와 일반적 이익에 따른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 성립한다고 하였다. 국가급부의 직접적 이익을 향수하는 자는 그 경비를 부담해야 하고 전사회에 있어서 일반적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각각의 조세에 관한 논의는 재정의 기본원리나 조세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현대국가는 모두 그 수입의 주원천을 조세에 의존하고 있어 조세국가라고 부른다. 특히 오늘날 복지국가에 있어서도 조세는 소득분배를 의식적으로 수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대의 조세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조세의 공정성이다³⁾.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조세정책에 있어서의 정의와 공정성의 구현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어떤 형태의 부담이 조세의 공정성과 일치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스미스의 『국부론』 제5편 ‘주권자 또는 국가의 수입에 관하여’를 중심으로 조세의 원칙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공정성의 원칙

스미스의 제 1원칙은 공정성의 원칙이다. 원래 공정성에 대한 개념규정은 도덕철학의 분야에 속하는 일이지만 스미스 시대에 있어서는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취급하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공평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였다.⁴⁾

“모든 국가의 국민은 각자의 능력에 될 수 있는 대로 비례하여, 즉 그들이 각각 국가의 보호하에서 향수하는 수입에 비례하여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공납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느 대국민의 개개인에 대한 정부의 경비는 대소유지의 공동차지인에 대한 경영비와 같은 것이며 이 모든 공동차지인은 그 소유지에서의 그들 각자의 이해관계에 비례하여 공납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일반원칙을 준수하느냐 무시하느냐에 따라 소위 과세의 공평 또는 불공평이 있다.”⁵⁾

3) 이필우 「재정학 개론」, 법문사, 1980, p.277.

4) 차병권, 「재정학 개론」, 박영사, p.52

5) A. Smith, *op. cit.*, p.30

이 원칙에 있어서 문제로 되는 것은 두가지 점이 있다. 첫째, 공평의 개념을 둘러싼 문제, 둘째, 그 공평의 실현방법을 둘러싼 문제이다. 후자의 문제는 능력설이나, 이익설이나로 논의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음미되고 있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 원칙의 중요성은 엄밀한 조세의 개념적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조세의 근거를 후자의 문제와 관련시켜 나타내고 있다.⁶⁾

스미스는 조세부담의 배분 기준으로서 이익만이 아니라 능력을 강조하였으며 가능한 한 국가급부의 직접적 이익을 향수하는 자가 그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더구나 전사회에 있어서 일반적이익을 가지는 경우는 일반공납인 조세로써 부담해야 한다. 납세의무는 소작인의 소유지에 대한 이해관계에 비례하여 공납의 의무를 진다. 국가의 보호하에 신하와 백성의 생활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보호에 대한 의무로서 조세의 근거가 성립한다. 이런 견지에서 스미스는 조세의 제 1원칙에서 신하와 백성이 조세를 부담하는 근거와 국가의 보호에 대한 의무적인 이유를 구하고 있다.

스미스는 국가의 보호에 대한 의무로서 조세근거는 시민과 국가의 윤리관에 입각하고 있었다. 원래 정부의 발생은 시민의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개인이 그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면 그만큼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존립은 개인의 생활유지를 전제로 하여 보호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공리의 원리가 지배한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의 유지 특히 국가의 유지라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며 의무라고 주장한다.

스미스는 조세의 근거로서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가 개인의 재산이나 생명의 보호와 일반적인 이익에 비춘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 성립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제1원칙 즉 공평의 원칙은 이와 같은 조세의 근거에 입각해서 각 개개인의 능력에 비례해서 국가를 유지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규범이다. 그리고 이 원칙을 준수하느냐, 않느냐는 과세의 공평인가, 불공평인가의 기로인 것이다.⁷⁾

스미스는 국가의 경비로서 네가지를 들며 결론으로 전사회의 일반적이익을 위해 지불하고 변제하는 경비는 전사회의 일반공납 즉 조세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 한편 전사회의 필요한 것이 있어도 그 이익을 받는 것이 직접 사회의 일부에 한하는 경우는 특별공납에 의해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일반공납에 의한 경우는 사회의 전원이 각 개개인의 능력에 가능한 만큼 비례해서 공납해야 한다. 따라서 제1원칙은 국가의 보호를 향수하는 제각기 각자의 수입에 비례해서 즉 각자의 능력에 비례해서 조세를 부과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각자의 능력의 실체를 수입에서 구하여 이러한 점을 주안점으로 해서 조세의 지불능력을 판단해야하는 것이다.

6) 西村正幸, 『「アスムスミスの 재정론 강의」』, 嵯峨野書院, 1981.

7) A. Smith, *op. cit.*, p.20

스미스는 납세액이 수입에 비례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과세의 공평은 평등한 것을 평등하게 취급하는데서 이룩되는 까닭에 개인의 소득과 같이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은 불평등한 것으로 시인하고 비례과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하였다. 만일 조세가 경제적 중립성을 파괴하고 기존의 경제상태를 교란하게 된다면 과세의 공정성은 파괴된다. 그리하여 스미스는 경제적 중립성을 보위하는 조세는 중농주의자와 같이 세 개의 수입원인 임금·이윤·지대 중에서 잉여생산물인 지대에 부과하는 조세라고 보았던 것이다.⁸⁾ 그 밖에 부유한 소비자에 귀착되는 사치품 소비세도 그러한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반하여 임금 및 이윤에 대한 과세는 임금의 상승, 가격상승, 이윤율저하 등을 일으키고 재생산과정을 교란하게 한다고 보았다.

이상에서 스미스의 공평성의 이념은 조세의 근거와 조세부담 관계와의 통일적인 이념에 의한 공평성의 원칙인 것이다.

Ⅲ. 확실성의 원칙

스미스의 제2원칙은 확실의 원칙이다. 납세의무는 각자에게 명확하게 또 평이하게 법률로서 정하여져야 하며 조세관리나 징세청부인의 자의적인 판단이어서는 안된다. 지불시기·지불방법·지불금액은 공납자에게나 모든 다른 사람에게나 모두 명백하게 알기 쉬운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조세를 부담해야 하는 모든 사람은 다소나마 징세인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다. 즉 징세인은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 어떤 공납자에게는 조세를 더 무겁게 하든지 또는 더욱 무겁게 하겠다고 위협하여 어떤 뇌물 즉 부수입을 강요하든지 할 수 있다. 스미스는 과세의 불확실은 본래 인기없는 계급의 사람들의 오만함을 조장하고 부패를 장려하는 것이며 그러한 사람들이 거만하지도 부패하지도 않은 곳에서까지 그러하다. 과세에 있어서는 각 개인이 지불해야 할 금액이 확실히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모든 국민의 경험에서 내가 믿고 있는 바로는 상당한 정도의 불공평이 있더라도 이것은 아주 적은 정도의 불확실에 비한다면 그렇게 큰 폐해는 아닌 것 같다⁹⁾라고 하였다.

이 원칙은 각개인이 지불해야 할 의무를 지는 조세는 확실하지 않으면 안된다. 요컨대 자

8) 차병권, 전게서, p.53

9) A. Smith *op. cit.*, pp.310-311.

의적이어서는 안되는 원칙이다. 더구나 조세가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국고의 충분성을 만족시킨다. 그렇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확정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즉 지불시기, 지불방법, 지불금액의 모두가 공납자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명백하고 평이한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조세가 개인으로부터 지불되는 경우 이들 세가지 조건이 확정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는 징세인의 감정에 의해 납세자에 대하여 부당한 납세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그만두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첫째 이유이다. 즉 조세징수인의 권력하에 두면 조세의 가중을 예지하는 것에 의해서 납세자는 뇌물을 주게 되고 조세를 낭비해버린다고 하는 부정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조세의 불확정성은 거만하지도 않고 부패하지도 않은 경우에 까지, 본래 인기가 없는 사람들을 더욱 더 거만하게 점점 더 부패시켜 버린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확실성의 원칙은 제1의 원칙의 비용인 조세의 공평성을 보전하는 것이다. 즉 불공평에 의해서 생기는 시장경제에 있어서 생산력의 저하를 방지하는데 충분히 유용한 것이다. 개인의 경제행위가 되도록 징세행위에 의해 저해되지 않도록 어떤 배려에 입각해서 조세의 지불시기, 지불방법, 지불해야 할 금액이 명료하여야 되는 동시에 간결하지 않으면 개인의 경제활동은 계획적 합리적으로 영위되지 않고 생산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라고 井手文雄교수는 설명하고 있다.¹⁰⁾

IV. 편의성의 원칙

스미스의 제3원칙은 편의성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모든 조세가 그것을 지불하는 납세자에 있어서 가장 편의성을 갖도록 시기 및 방법을 잘 선택해서 부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모든 조세는 공납자가 그것을 지불하는데 가장 편리할 것 같은 시기와 방법으로 징수되지 않으면 안된다. 토지의 거래 또는 가옥의 임대료에 대한 조세는 이러한 지대와 임대료가 보통 지불되는 것과 같은 시기에 지불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공납자가 지불하는데 가장 편리할 듯한 시기 즉 그가 지불할 수단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시기에 징수되는 것이라 하겠다. 사치품과 같은 소비재화에 대한 조세는 결국 모든 소비자에 의하여 지불되는데 그에게

10) 井手文雄, 『古典學派の 재정론』, 창조사, p.298.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지불된다. 그는 그 재화를 살 필요가 있을때 마다 조금씩 그 조세를 지불하는 셈이다. 또한 그가 그 재화를 사든지 안사든지 하는 것은 그의 자유이므로 만일 그가 그러한 조세 때문에 어떤 상당한 불편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업자득일 수 밖에 없다.”¹¹⁾

조세지급의 시기 및 방법은 수입의 처분과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이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 재생산력을 저해하는 과세효과가 가장 적은 것이다. 예를 들면 지대 또는 가옥의 임대료에 대한 조세는 지대가 지불되는 시기에 부과되면 납세자는 가장 편리하다. 또 소비자와 같은 경우는 그 시기를 특별히 필요로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결국 조세부담을 모든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그 구매행위는 개인의 자유이므로 그들 자신의 책임에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결국 개인의 경제활동 자유를 저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원칙이다. 요컨대 이 편의성의 원칙은 제2의 원칙인 확실의 원칙과 더불어 개인의 경제적 활동 및 그 이익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원칙이다.

V. 최소성의 원칙

모든 조세는 국고에 수납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세자로부터 징수하는 정도가 가급적이면 적어야 한다. 즉 징세비가 적어야 하며 또 조세가 민간기업을 억제하고 기업가들로 하여금 다수인에게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제공하고 직업을 갖게 해주는 특정한 업무에 노력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시켜서는 안된다.¹²⁾

“모든 조세는 이것을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끌어내거나 호주머니 밖에 보존해 두거나 간에 그것이 국고에 납입되는 초과분은 될 수 있는대로 적게 초과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¹³⁾ 여기에서 스미스는 조세의 경제적 원칙을 논하고 있으며 이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징세비의 최소를 주창하고 있는 것이다. 조세가 본질적으로 비생산적이니까 될 수 있는대로 개인에게 가치분소득으로서 머물러 하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물며 그것이 국고에 들어가는 금액이상 국민으로부터 유출하게 되면 그만큼 개인의 경제활동은 축소

11) A. Smith, *op. cit.*, p.311.

12) 차병권, 전제서, p.52

13) A. Smith, *op. cit.*, p.113.

된다. 그래서 국가전체로서는 그 국고의 납입액과 국민의 지불과의 차액은 낭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차액인 낭비는 될 수 있는한 최소로 할 필요가 있다.

스미스는 이 국고의 납입액과 국민의 지불액의 차액이 적기 위해서는 다음 네가지 원인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조세의 징수에 다수의 징세인을 필요로 하고 그들의 봉급이 조세의 산출량의 대부분을 잠식해버리며, 그들의 부수입은 또 하나의 추가적 조세를 국민에게 부과하게 되는 수가 있다.”¹⁴⁾ 즉 인건비의 절약을 제창하고 조세부과를 위한 많은 징세인을 필요로 한다. 징세인의 봉급지불을 위해 조세수입의 대부분을 소비하며 또 부가적인 조세의 부과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세가 본질적으로 비생산적이라고 간고한 스미스에 있어서는 인건비의 절약을 충분한 국가직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많은 징세인은 그만큼 낭비를 의미하고 있다. 결국 생산력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징세기술 또는 기구의 합리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조세가 국민의 생산활동을 방해하며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생활자료와 직업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를만한 어떤 사업부문에 국민이 종사하는 것을 저지하는 수가 있다. 조세는 국민에게 납세를 강요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편으로 국민이 더 쉽게 납세할 수 있게 해주는 자원의 어떤 것을 이렇게 해서 감소시키든지 파멸시킬지도 모른다.”¹⁵⁾ 즉 조세가 국민의 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가능한한 납세를 강제하면서 한편 원래의 자금을 감소 또는 파멸시키지 않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스미스는 납세를 의무로 하는 것은 국가직능의 수행을 위해 충분한 국고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며,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경제의 자본을 감소 또는 파멸시키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내산업을 조세에 의해서 저해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겠다.¹⁶⁾

셋째, “조세를 피하여 실패하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재산의 몰수와 그밖의 형벌을 과함으로써 조세는 그들을 파멸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가 그들의 자본의 운용을 통하여 받을 수 있었을 이익에 끝장을 내어버리는 수가 흔히 있다”¹⁷⁾ 즉 조세를 일탈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이나 분별없는 조세에 의해 행해지는 밀매매에 대한 몰수나 형벌 등의 법률은 조세의 법에 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로 하여금 필요 이상 또는 가중한 과세에 의해, 예를 들면 불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개인의 자유 특히 경제의 기초로서 원자를 감소시켜 버리는 법률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14) *Ibid.*, p.311

15) *Ibid.*, p.311

16) 西村井幸, 전계서, p.91.

17) *Ibid.*, p.312.

넷째로 “국민은 징세인의 빈번한 방문과 밍살스러운 검사에 따라야 하므로 조세는 그들에게 불필요한 수고를 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억압을 당하게 하는 수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속상하다는 것은 엄격히 말한다면 비용은 아니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이 기꺼이 그것을 지불하여 그러한 분함에서 벗어나려고 할만한 비용과 등가임이 확실하다.”¹⁸⁾ 즉 징세인의 빈번한 입검이나 지겨운 검사를 폐지하고 개인의 경제활동을 충분히 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스미스의 제4원칙은 과세기술·경제정책·법률문제 및 조세정책의 수행에 해당하는 기준을 전개하고 있으며 조세부담의 분배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리키고 있는 규범이다.¹⁹⁾ 따라서 이 원칙은 재정정책적 원칙(국고주의적 원칙), 국민경제적 원칙(생산력의 원칙) 사회정책적 원칙(정의의 원칙)을 의미하고 있다고도 생각된다.

VI. 결 론

아담 스미스의 경제사상을 흔히 자유주의 심지어는 자유방임주의라는 말로 요약한다. 그의 경제학 전체계는 자연적 자유에 입각한 ‘사물의 자연적 경로’를 추구하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일체의 간섭을 거의 죄악시하여 이를 배제하고 있으며 더욱이 그의 자유주의 사상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다.

스미스는 국민경제의 자율적 재생산과정에 있어서 부의 증대를 기대하고 이를 위해 개인의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국가활동의 개인에 대한 경제적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정하는 것이 중대한 임무이었다. 국가의 경비는 국가의 직능수행에 필요한 비용이고 행정에 수반하는 지출현상으로서, 이에 국가의 직능에 제약된 것이고 국가의 직능은 그 시대의 사회적·경제적 사정에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경비는 자연적 자유의 제도에 입각한 경제의 틀 또는 자유주의 사상에 입각한 사회에 있어서 유용한 것이다.

이러한 스미스의 사상적 및 윤리적 논리를 배경으로 재정이론이 전개되며 조세원칙도 이 해되어야 한다.

첫째, 스미스의 조세원칙을 관통하는 이념은 조세가 산업에 있어서 재생산과정에서의 활동을 축소시키고 동시에 그 자본의 원천을 탈취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국민경제상 생산력과

18) *Ibid.*, p.312.

19) *Ibid.*, pp.379-383.

의 관계에 있는 원칙이다.

둘째, 스미스는 정치경제학의 목적인 국가의 직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입을 공급해야 하며 이것에 대해 절약과 낭비를 피하는 것이 요청되며 국고주의에 의해 재정정책적 원칙이 세워졌다. 국부의 증진은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에 의해 경제적 자율성에 입각하여 촉진되고 개인의 경제적 자율에 대한 압박은 모두 해악이며 조세도 비생산적이므로 개인을 경제적으로 덜 압박하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스미스의 조세이론은 이익설과 능력설의 양면이다. 공공지출의 비용은 발생한 이익에 따라서 배분되어야 하며, 또한 공공지출을 이익원칙에 기초하여 배분되지 않을 경우 일반적 공헌이 사용되어질 수 밖에 없다. 각개인이 받는 이익과 비용 부담액은 이것을 어떻게 측정하면 될 것인가라는 측정의 실제적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에 귀속하는 이익을 측정하는 방법 대신에 경험에 의한 방법을 필요로 하여왔다. 이 경험에 의한 방법을 스미스는 개개의 능력에 비례하여 즉 국가의 보호에 기인하여 각개인이 개개로 향수하는 수입에 비례하여 과세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 김 완 순, 「재정학」, 법문사, 1981.
- 박 기 혁, 「경제학사」, 법문사, 1981.
- 성 창 환,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 『경제론집』, 제15권 제4호,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79.
- 신 규 성,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 재평가” 『법경논총』 제16편, 동아대학교, 1976.
- 이 필 우, 재정학개론, 법문사, 1989.
- 이 한 유, “아담 스미스의 도덕정서론과 국부론과의 관계” 『경제사학』 제3호 경제사학회, 1979.
- 정 윤 형, 「서양경제사상사연구」, 창작과 비평사, 1981.
- _____, “아담 스미스의 무역사상에 관한 연구” 『홍대논총』II, 홍익대학교, 1970.
- _____, “아담 스미스의 경제발전관에 관한 연구” 『홍대논총』IV, 홍익대학교, 1972.
- 정 해 동, 「아담스미스」, 유평출판사, 1981.
- 차 병 권, 「재정학개론」, 박영사, 1980.

_____, 『조세개론』, 박영사, 1980.

최 임 환 역, 『국부론』 상·하, 을유문화사, 1975.

최 환 열, “A. Smith 이론분야의 창조적발전” 『경제논총』 제2편, 국민대학겨어제연구소, 1979.

_____, “경제학사상에 있어서 스미스와 케인즈” 『논문집』 I, 청주대학교, 1957.

西村井幸, 『アスムスミスの 재정론 강의』, 嵯峨野書院, 1981.

井手文雄, 『古典學派の財政論』, 창조사. p.298.

Eric Roll, *A History of Economic Thought*, 3rd ed. Printice-Hall Inc. 1956.

Fay, C. R, *Adam Smith and The Scotland of His Da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6.

Smith, Adam, *An Inquiry into the Nature cause of the Wealth of Nations*, ed., Edwin Camman, M.A. 6th, ed. London, 1950.

Smith, Adam,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Oxford University Press, 1959.

<ABSTRACT>

Adam Smith의 조세원칙에 관한 재음미

Kwang-Sik Chi *

A tax may either take out or keep out of the pockets of the people a great deal more than it brings into the public treasury, in the four following ways.

First, the levying of it may require a great number of officers, whose salaries may eat up the greater part of the produce of the tax, and whose perquisites may impose another additional tax upon the people.

Secondly, it may obstruct the industry of the people, and discourage them from applying to certain branches of business which might give maintenance and employment to great multitudes.

Thirdly, by the forfeitures and other penalties which those unfortunate individuals incur who attempt unsuccessfully to evade the tax, it may frequently ruin them, and thereby put an end to the benefit which the community might have received from the employment of their capitals. an injudicious tax offers a great temptation to smuggling.

Fourthly, by subjecting the people to the frequent visits and the odious examination of the tax-gatherers, it may expose them to much unnecessary trouble, vexation, and oppression; and though vexation is not, strictly speaking, expence, it is certainly equivalent to the expence at which every man would be willing to redeem himself from it.

* Instructor, Ph. D in Economics, School of Commene and Economics, Dankook University.